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관세청 고시 제2022-22호 전면 개정 -

관세청에서 발표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고시·훈령·지침에 각각 혼재된 유사한 조문을 고시로 통합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권 확대 반영,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율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된 규정을 고시로 통합·일원화

현행	내용	개정 안
〈중전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법령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내용 (표시방법, 제재조치)	〈통합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중전훈령〉 「국내 유통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에 관한 훈령」	권한 행사를 지시 하는 내용 (조사방법, 제재조치)	〈폐지〉
〈중전지침〉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	세부적인 업무절차 및 제재조치표 등 (업무분장, 제재조치)	〈폐지〉

-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율 확대, 현지시정 허용사유 추가,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크기 통일, 의견 제출기간 연장 등)
- 수요자 편의를 위한 용어·서식 정비

II. 주요 개정내용

1. 유사 조문 통합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1) 고시, 훈령, 지침에 각각 혼재된 유사한 조문을 고시로 통합*

*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조치사항이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고시로 통합

2) 보세구역반입명령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 (제32조, 별지13, 별지14)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조문	종전고시 15조 + 종전훈령 19조	개정고시 32조	조문 통합
서식	종전고시 별지10 + 종전훈령 서식9	개정고시 별지13	서식 통합
	종전훈령 서식8	개정고시 별지14	훈령 ⇨ 고시 이동

3) 시정명령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 (제2조, 제33조, 별지6, 별지7)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조문	제재지침 2조2호	개정고시 2조14호	지침 ⇨ 고시 이동
	종전고시 16조①~⑤	개정고시 33조①~⑤	존치, 문구수정
	종전훈령 20조①~④	개정고시 33조⑥~⑨	훈령 ⇨ 고시 이동
서식	종전고시 별지4	개정고시 별지15	별지 위치 이동
	종전훈령 서식10	개정고시 별지16	훈령 ⇨ 고시 이동

4) 과징금 부과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 (제36조)

- 과징금부과기준을 물품별로 구분하여, 공산품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시행령을 인용하여 [별표13]으로 통합
- 과징금부과절차 관련된 종전고시 19조·19조의2, 종전훈령 22조~24조, 제재지침 9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 (36조③~⑧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조문	종전고시19조·19조의2 + 종전훈령22조·23조·24조 + 제재지침9조	개정고시 36조 (과징금부과절차)	조문통합 훈령, 지침 ⇨ 고시
서식	종전훈령 별표2 + 제재지침 별표1·별표2 + 대외무역법시행령 별표2 + 원산지표시법시행령 별표1의2	개정고시 별표13 (과징금부과기준)	별표통합 훈령, 지침 ⇨ 고시

5) 과태료 부과 관련 조문 및 서식 통합 (제37조)

- 과태료부과 관련 종전고시 19조의2·20조의2, 종전훈령 25조~28조, 제재지침 11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 (제37조)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조문	중전고시19조의2·20조의2 + 중전훈령25·26·27·28조 + 제재지침11조	개정고시 37조 (과태료부과절차)	조문통합 훈령, 지침 ⇨ 고시
서식	중전훈령 별표2 + 제재지침 별표3 + 대외무역법시행령 별표4 + 원산지표시법시행령 별표2	개정고시 별표14 (과태료부과기준)	별표통합 훈령, 지침 ⇨ 고시

6) 고시, 훈령, 지침에 산재된 교육명령 규정을 개정고시에 통합 (제38조)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명령 관련 중전고시 19조의3, 중전 훈령 28조의3, 제재지침 12조를 개정고시로 흡수·통합 (제38조)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조문	중전고시19조의3 + 중전훈령28조의3 + 제재지침12조	개정고시 38조 (위반자교육규정)	조문통합 훈령, 지침 ⇨ 고시
서식	중전훈령 서식24호 제재지침 별지9호	개정고시 별지27 (교육이수명령서)	별표통합 훈령, 지침 ⇨ 고시

2. 조문 구분 체계 조정

- 조문의 수에 비해 구분 단위가 많고 체계가 비효율적이므로, 장(章) 구분은 존치하고 절(節) 구분은 삭제
※ 1장, 2장 1절·2절·3절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3. 조문 및 별지 서식 재배열 (제10조 등)

- 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조문배치 순서를 조정하고, 해당 조문 관련 별표·별지 서식 순서 조정

【조문·서식의 순서 조정 예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조문	중전고시17조의2	개정고시 10조 (원산지증명서 제출)	조문 순서 조정
서식	중전고시 별지13호	개정고시 별지1 (원산지증명서 양식)	서식 순서 조정

4. 원산지표시 단속권 확대 반영(국내생산물품 추가) (2·13·23조)

- ‘국내 유통 중인 수출입물품’ 정의 추가 (제2조제12호)
- ‘국내생산물품’ 용어의 정의 신설 (제2조제13호)

- 조사대상 확대, 조사수행 방식 구체화 (15조, 19조)
- 정보범위확대 ('원산지증빙서류' ⇨ '원산지증빙자료') (2조10호, 31조2항)

5.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크기 명확화 (제3조)

- 농수산물은 표시면적에 따라 크기(8·12·20포인트)를 규정하고, 그 가공품은 표시면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

6. 불명확한 예시 삭제 (제4조)

- 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를 생략하는 예시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해당 예시 삭제(제4조제4항)
 - ※ 거래.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 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표시생략가능 ⇨ **예시 삭제**

7. 원산지 국가명 표기 명확화 (제7조)

- 널리 쓰이는 원산지국명 표기 예시 중에서 영국의 **지역 명칭**(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을 **삭제**(제7조제4호)

8. 원산지표시위반자 명단 공표 규정 신설 (제39조)

- 원산지표시 위반자명단 공표권한이 산업부에서 관세청으로 위탁되어, 훈령의 관련 규정을 고시로 흡수(훈령 28조의2·고시 39조)
 - ※ 대외무역법시행령 91조⑥항1의3호, 위반금액 10억원 이상 과징금 대상자

9.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율 확대 (별표13)

- 시중유통물품 원산지표시 1차 위반 과징금 부과할 때, 현행 경감율(30%)을 중소기업에게는 법정 최대치인 **50%까지로 확대하여 자금부담 완화** (별표13)
 - ※ ① [근거] 과징금경감사유에 '중소기업여부' 추가 (대외무역법시행령 60조)
 - 〈중전〉 위반정도·횟수 등 ⇨ 중전 + **중소기업여부**
 - ② [경감] 허위표시·손상 판매분 1차 위반에 대해 경감율 30% 적용
 - ⇨ 중소기업에게는 시행령 60조 경감율의 법정최대치 **50%까지 적용**

10. 시정명령 · 과징금 의견제출기간 명확화(33조, 36조)

- 시정명령 의견제출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일**'로 수정(33조⑧항)
- 과징금 의견제출기간을 '2주간'에서 '**14일간**'으로 수정(36조⑤항)
 - ※ 「행정절차법」21조③항 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 종전훈령 20조③항 시정명령은 '10일 이내', 종전고시 19조②항 과징금은 '2주간'으로 다름 ⇨ '14일'로 명확화

11.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연장(제37조)

-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의견진술기간 보장(37조③항)
 -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개정('23.12.22) 사항 반영

III. 의견제출

-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담 당 자 : 채정균사무관(042-481-7742), 추영주주무관(042-481-7897)
- 제출기한 : 2024. 04. 12. (금)
- 제출방법 : (이메일) cuppy1@korea.kr, chunam606@korea.kr, (팩스) 042-481-7791

I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2]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I Contact



양다운 관세사 / Senior Manager

T 02-6011-3051
E dyyang@esein.co.kr



김재우 관세사 / Senior

T 070-4353-1522
E jwkim@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